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78호 2024. 3. 7.(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35호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 1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4-320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2
- 사천시 공고 제2024-342호 고읍·선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 ----- 3
- 사천시 공고 제2024-349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0
- 사천시 공고 제2024-351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
- 사천시 공고 제2024-354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2
- 사천시 공고 제2024-355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 사천시 공고 제2024-356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1
- 사천시 공고 제2024-357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1
- 사천시 공고 제2024-361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1
- 사천시 공고 제2024-366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7

○ 사천시 공고 제2024-367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7
○ 사천시 공고 제2024-368호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83
○ 사천시 공고 제2024-369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90
○ 사천시 공고 제2024-370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6
○ 사천시 공고 제2024-372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19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76 / FAX 831-6012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고시 제2024-35호

##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사천시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7일

## 사 천 시 장

1. 책임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지구	위치	필지수(필)	면적(m <sup>2</sup> )	계약금액(원)
총 계		1,078	316,832	219,495,000
정의3지구	사천읍 정의리 380-1번지 일원	47	5,894	8,789,000
수석4지구	사천읍 수석리 68-4번지 일원	66	15,626	12,342,000
초전1지구	사남면 초전리 422-1번지 일원	110	32,027	20,570,000
구평1지구	서포면 구평리 310-2번지 일원	204	89,375	38,154,500
동동1지구	동동 91번지 일원	38	11,387	8,151,000
동동2지구	동동 32번지 일원	53	10,910	11,368,500
서동4지구	서동 311-1번지 일원	49	7,381	10,510,500
서동5지구	서동 176-25번지 일원	62	30,918	13,299,000
선구3지구	선구동 26-223번지 일원	143	30,447	30,673,500
선구4지구	선구동 7-2번지 일원	91	15,569	19,519,500
선구5지구	선구동 76-2번지 일원	22	18,429	4,719,000
선구6지구	선구동 23-25번지 일원	28	3,728	6,006,000
동림4지구	동림동 125-4번지 일원	90	20,695	19,305,000
좌룡1지구	좌룡동 31-3번지 일원	75	24,446	16,087,500

3. 위탁 업무: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4. 문의처: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팀(☎055-831-2842, 2843, 2378, 2355)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공고 제 2024-320호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 3. 7.

## 사 천 시 장

-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공 고 기 간 : 2024. 3. 07. ~ 2024. 3. 22.(15일간)
-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38라0940	렉서스 IS250	강*훈	2024. 2. 27.	차량 소유주의 허락 없이 지인이 불법으로 차량을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아 운행정지를 신청함.

### 4. 공 고 내 용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공고 제2024-342호

## 『고읍·선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시송달 공고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고읍·선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사업인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장소를 알 수가 없어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가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3. 7.

## 사 천 시 장

### 1. 사업의 종류와 명칭

- 가. 종 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나. 명 칭: 고읍·선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사천시장(재난안전과장)
- 나.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3. 사업예정지: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예수리, 화암리 일원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4.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A=60,938\text{m}^2$
- 사업규모: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증설  $Q=525\text{m}^3/\text{min}$ ,  $V=18,800\text{m}^3$ , 소하천 정비  $L=1.12\text{km}$ , 고지배수로  $L=1.40\text{km}$  등

## 5.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실시계획 수립 공고일
- 나. 준공예정일: 2027. 12. 31.

## 6. 열람기간 및 장소, 의견서 제출방법

- 가. 열람기간: 공고문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장소: 사천시 재난안전과 재난방재팀(☎055-831-3317)
- 다. 의견서 제출: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포함)

## 7.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과 같음

## 8. 관계도서는 재난안전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재난 안전과(☎055-831-3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번호	소재지 (사천시 정동면)	지번 (원래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	예수리	826-114	답	28	28	진*학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공원길 ***-*				
25	예수리	826-67	과	314	314	이*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920번길 **, ***호				
56	고읍리	608-71	과	238	238	이*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920번길 **, ***호				
57	고읍리	608-68	과	664	664	이*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920번길 **, ***호				
58	고읍리	608-64	과	1,782	1,782	이*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920번길 **, ***호				
59	고읍리	608-65	과	132	132	이*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920번길 **, ***호				
60	고읍리	478	과	212	110	이*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920번길 **, ***호				
61	고읍리	608-58	답	1,283	1,283	최*주	경남 사천시 사천읍 역사동길 **-, ***호	진주남부 농업협동 조합	경남 진주시 가호로 **	근저당권 지상권	
						김*덕	경남 진주시 정촌면 대축길237번길 **-*				
62	고읍리	532-2	답	410	410	최*주	경남 사천시 사천읍 역사동길 **-, ***호	진주남부 농업협동 조합	경남 진주시 가호로 **	근저당권 지상권	
						김*덕	경남 진주시 정촌면 대축길237번길 **-*				
63	고읍리	532-1	답	274	274	이*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57, **동 ***호				
64	고읍리	479	대	317	175	이*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57, **동 ***호				
65	고읍리	531	답	1,324	1,324	안*희	경기도 의정부시 장금로78번길 **, ***동 ****호				
67	고읍리	527	답	380	232	정*순	경남 사천시 정동면 동계길 **				
72	고읍리	527-6	답	32	32	정*순	경남 사천시 정동면 동계길 **				
85	고읍리	515-3	답	96	96	권*환	고읍리 ***				
86	고읍리	515-2	구	79	65	권*환	고읍리 ***				
91	고읍리	513-2	구	56	56	정*식	사천읍 선안동				
94	고읍리	513-1	전	153	67	강*우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401번길 **, ***동 ****호				
100	고읍리	608-81	답	109	21	박*오	고읍리 ***				
104	고읍리	377	답	102	102	박*울	경남 사천시 사천읍 노방천길 **	이*숙	경남 사천시 좌룡2길 **	근저당권	
107	고읍리	376-3	답	112	112	김*환	경남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 ***동 ****호				
108	고읍리	376-1	대	397	86	조*애	경남 사천시 정동면 동계길 **-*	사천 축산업 협동조합 주식회사 그린조이	경남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84번길 **	근저당권
111	고읍리	375-2	답	36	4	김*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 ***동 ***호				

일련번호	소재지 (사천시 정동면)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2	고읍리	376-4	답	354	354	김**웅	고읍리				
113	고읍리	374-4	답	671	268	김*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 ***동 ***호				
115	고읍리	374-5	천	271	271	김*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 ***동 ***호				
120	고읍리	403-1	답	2,843	24	이*남	경남 김해시 팔만로 **, ***동 ***호				
						이*태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포길 **-, ***동 ***호				
						이*석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포길 **-, ***동 ***호				
125	고읍리	402-2	답	1,455	161	강*녀	경남 사천시 정동면 동계길 **				
126	고읍리	402-3	답	853	107	김*자	경남 사천시 정동면 정동중앙로 *-**, *동 ***호	수곡농업 협동조합	경남 진주시 수곡면 옥수로 ***	근저당권 지상권	
						정*숙	경남 하동군 고전면 범사2길 *				
						정*철	경남 진주시 대신로 348번길 *-*				
128	고읍리	401-1	답	2,509	253	김*자	경남 사천시 정동면 정동중앙로 *-**, *동 ***호	수곡농업 협동조합	경남 진주시 수곡면 옥수로 ***	근저당권 지상권	
						정*숙	경남 하동군 고전면 범사2길 *				
						정*철	경남 진주시 대신로 348번길 *-*				
143	고읍리	337-9	답	1,282	260	정*수	경남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 *동 ***호				
						최*남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2길 *				
145	고읍리	337-3	답	1,977	367	주*공	고읍리 **				
146	고읍리	331-2	과	1,287	152	최*경	경남 창원시 합포구 산호북길 *, ***동 ***호				
149	고읍리	337-6	답	1,600	265	김*기	경남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 ***동 ***호				
152	고읍리	351-2	답	465	256	박*운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길 **, ***동 ***호				
						김*탁	경남 진주시 향교로 *, *동 ***호				
						정*영	경남 진주시 새평거로 **, ***동 ***호				
153	고읍리	351	대	1,730	42	박*운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길 **, ***동 ***호				
						김*탁	경남 진주시 향교로 *, *동 ***호				
						정*영	경남 진주시 새평거로 **, ***동 ***호				
154	고읍리	333-2	답	23	1	정*구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길 ***				
155	고읍리	333-1	답	53	12	정*구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길 ***				
221	화암리	805	답	1,776	284	김*자	경남 사천시 사천읍 평화2길 **				



일련번호	소재지 (사천시 정동면)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25	화암리	862-1	답	1,208	278	김*자	경남 사천시 사천읍 평화2길 **				
247	화암리	831-2	답	3,590	24	김*실	경남 진주시 신안들말길 **, ***동 ***호	이*호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 대흥-그랜저맨션 ***호	근저당권	
251	고읍리	359-10	대	253	253	정*자	경남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 *동 ***호	정동농업 협동조합	경남 사천시 정동면 상정대로 ****-**	근저당권	
253	고읍리	359-13	대	515	515	고*호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길 ***				
						고*현	전남 광양시 길회길 **, ***호(중동)				
256	고읍리	331-3	도	210	210	김*식	경남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 ***동 ***호				
257	고읍리	393-17	도	2	2	하구마을회	경남 사천시 동계길 ***-**				
						이*희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2길 **				
261	고읍리	331-8	답	81	81	장*선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2길 **-*				
263	고읍리	339-6	답	2,053	379	박*한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 *-***				
						정*호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아대로773번길 **, ***동 ***호				
265	고읍리	160	답	912	380	강*기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길 **				
274	고읍리	179-1	답	1,765	150	장*숙	전남 여수시 양지길 *, ***동 ***호				
279	고읍리	164-2	대	347	47	최*경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 ***동 ***호	주식회사 이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	근저당권 지상권	
280	고읍리	171-1	답	4,978	595	최*경	충남 계룡시 남선면 남선리 ***-*, 군인아파트 ***동 ***호				
						최*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동 ***호				
284	고읍리	171-2	답	2,736	230	박*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 ***동 ***호				
						오*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97번길 **-**, *동 ***호				

나. 사용하거나 수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사천시 정동면)	지번 (원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고읍리	532-2	창고	컨테이너	13.5	㎡	김*덕	경남 진주시 정동면 대죽길237번길 **_*				
6	고읍리	339-6	창고	컨테이너	18.9	㎡	박*한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 *_***				
7	고읍리	339-6	창고	조립식	15.7	㎡	박*한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 *_***				
8	고읍리	331-2	창고	컨테이너	34.2	㎡	최*경	경남 창원시 합포구 산호북길 *, ****동 ****호				
9	고읍리	331-2	창고	조립식	9.8	㎡	최*경	경남 창원시 합포구 산호북길 *, ****동 ****호				
12	고읍리	359-10	가옥	슬라브 및 조적조	127.3	㎡	정*자	경남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_* **동 ***호				
			창고	컨테이너	19.2	㎡						
			담장	블록담장	19.1	m						
14	고읍리	532-1	감나무		21	주	이*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 **동 ***호				
15	고읍리	479	감나무		16	주	이*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 **동 ***호				
			조경수		6	주						
16	고읍리	402-3	감나무		11	주	정*철	경남 진주시 대신로 348번길 *_*				
17	고읍리	401-1	감나무		21	주	정*철	경남 진주시 대신로 348번길 *_*				
21	고읍리	337-9	감나무		10	주	정*수	경남 사천시 정동면 진삼로 ****_* **, *동 ***호				
22	고읍리	337-3	감나무		34	주	주*공	고읍리 **				
26	고읍리	171-2	감나무		53	주	박*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 ****동 ***호				
28	고읍리	171-1	감나무		38	주	최*경	충남 계룡시 남선면 남선리 ***_* 군아파트 ***동 ***호				
29	고읍리	164-2	감나무		4	주	최*경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산로 **, ****동 ****호				
31	고읍리	179-1	감나무		10	주	장*숙	전남 여수시 양지길 *, ***동 ***호				
33	고읍리	179-1	비닐하우스	철재,비닐	39.7	㎡	장*숙	전남 여수시 양지길 *, ***동 ***호				
38	고읍리	339-6	감나무		24	주	박*한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 *_***				
40	고읍리	337-7	감나무		48	주	장*점	경남 사천시 사천읍 샘골길 **, 가동 ***호				

일련번호	소재지 (사천시 정동면)	지번 (원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1	고읍리	351-2	나무울타리		89	m	박*운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길 **, ***동 ****호				
42	고읍리	331-2	웬스		17.9	m	최*경	경남 창원시 합포구 산호북길 *, ***동 ****호				
43	고읍리	331-2	비닐하우스		35.6	m <sup>2</sup>	최*경	경남 창원시 합포구 산호북길 *, ***동 ****호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공고 제2024-349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여성회관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수강료 면제 기준 신설(안 제7조제2항)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145,

FAX: 831-6919)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 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4조 에 따른 <u>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u></p>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공고 제2024-351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 사 천 시 장

###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관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면제 기준 추가 및 신설((안)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13조2항)

7.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신설>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360, FAX: 831-6520)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lt;신 설&gt;</u></p>    <p>7. (생략)</p>	<p>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4조에 따른 <u>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공고 제2024-354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서식의 수영장을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혼동하지 않도록 명칭을 정비

###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의 수영장 명칭 정비(안 별표 1)

- 수영장 → 사천 실내수영장

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신설(안 별표 2)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20,

FAX : 831-6013)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중 “수영장”을 “사천 실내수영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수영장”을 “사천 실내수영장”으로 한다.

별표 2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50%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별표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1. 기본사용료

1. 기본사용료

구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초기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20,000	30,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일)	80,000	12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50,000		
사주체육관	초기	체육경기	1회(일)	6,000	7,000		
		체육이외	1회(일)	10,000	1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60,000			
(부대시설 제외)	야간	체육경기	1회(일)	9,000	12,000		
		체육이외	1회(일)	25,000	35,000		
삼천포 생활체육관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40,000	탁구장, 양구장 개별 적용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20,000	15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60,000	250,000		
수영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읍면동지역 육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00,000	150,000		
사동야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50,000		
공 도 장	1일(1사대)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인공암벽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풋 살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족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테니스장	개인	인조 마사	체육경기	1회 2시간 1 면당	7,000	8,000	6인제는 같은 용로 되나 같은 스쿠의 구 상인이 10명 이상인 경 우에 적용
			"	"	5,000	6,000	
	단체	인조 마사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20,000	30,000	스쿠의 구 상인이 30명 이상인 경 우에 적용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10,000	15,000	

구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초기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20,000	30,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일)	80,000	12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50,000		
사주체육관	초기	체육경기	1회(일)	6,000	7,000		
		체육이외	1회(일)	10,000	1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60,000			
(부대시설 제외)	야간	체육경기	1회(일)	9,000	12,000		
		체육이외	1회(일)	25,000	35,000		
삼천포 생활체육관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40,000	탁구장, 양구장 개별 적용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20,000	15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60,000	250,000		
사천 실내수영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읍면동지역 육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00,000	150,000		
사동야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50,000		
공 도 장	1일(1사대)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인공암벽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풋 살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족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테니스장	개인	인조 마사	체육경기	1회 2시간 1면당	7,000	8,000	6인제는 같은 용로 되나 같은 스쿠의 구 상인이 10명 이상인 경 우에 적용
			"	"	5,000	6,000	
	단체	인조 마사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20,000	30,000	스쿠의 구 상인이 30명 이상인 경 우에 적용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10,000	15,000	

5. 수영장 이용료

5. 사천 실내수영장 이용료

구 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 1인당 ○ 스쿠의 구 상인이 10명 이상인 경 우에 적용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 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1,500		
	어린이, 경로대상	1,000		

구 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 1인당 ○ 스쿠의 구 상인이 10명 이상인 경 우에 적용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 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1,500		
	어린이, 경로대상	1,000		

## 현 행

[별표 2]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	50%	별표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5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 「사천시 병역명단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	수영장만 적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수영장만 적용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5% 추가 할인

## 개 정 안

[별표 2]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	50%	별표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 「사천시 병역명단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	수영장만 적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50%	수영장만 적용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50%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5% 추가 할인

## 관 련 법 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 1. 17.>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공고 제2024-355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정기휴장일을 변경하여 수익성 향상 도모 및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에 대한 이용료 할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2. 주요내용

가. 사천바다 케이블카 정기휴장일 변경(안 제6조)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나.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할인 기준 신설(안 제12조)

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27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관광진흥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86, FAX: 831-6024)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월요일”을 “수요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14.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제27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일반케빈	크리스탈케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대인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소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6,000원	21,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중권발전협 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소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대인	9,000원	12,000원	1명 요금
	소인	8,000원	10,000원	

- ※ 1. 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율은 30% 이내로 한다.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0.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11.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정기휴장) 케이블카 운행의 정기휴장일은 매월 첫째, 셋째 <u>월요일</u>로 한다. 다만, 휴장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장일로 한다.</p> <p>제12조(이용료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표 3에 따라 할인 이용료를 적용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1. ~ 12.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p>13.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7조(관계 규정의 적용) ① (생략)</p>	<p>제6조(정기휴장) ----- ----- <u>수요일</u>-----.</p> <p>제12조(이용료의 할인) ① -----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u>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5조에 따른 <u>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u></p> <p>14. 「<u>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4조에 따른 <u>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u></p> <p>15. (현행 제13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7조(관계 규정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p>			

② 케이블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② -----  
-----  
-----  
-----  
-----  
-----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및 「사천  
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별표 3] &lt;개정 2023.12.21.&gt;</b></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b> (제1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0%;">일반 캐빈</th> <th style="width: 10%;">크리스탈 캐빈</th> <th style="width: 1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td> <td>대인</td> <td>13,000원</td> <td>18,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소인</td> <td>10,000원</td> <td>15,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국가보훈대상자</td> <td>15,000원</td> <td>20,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장애인</td> <td>15,000원</td> <td>20,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경로우대자</td> <td>16,000원</td> <td>21,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 rowspan="2">남해안남 중권발전 협의회 소속도시 주민</td> <td>대인</td> <td>15,000원</td> <td>20,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소인</td> <td>12,000원</td> <td>17,000원</td> <td>1명 요금</td> </tr> </tbody> </table> <p>※ 1. 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율은 30% 이내로 한다.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p>	구 분	일반 캐빈	크리스탈 캐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소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6,000원	21,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 중권발전 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소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p><b>[별표 3] &lt;개정 2024. . .&gt;</b></p> <p style="text-align: center;"><b>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b> (제12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 분</th> <th style="width: 10%;">일반 캐빈</th> <th style="width: 10%;">크리스탈 캐빈</th> <th style="width: 1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span style="color: blue;">사천향우 인증을 소지한 사람</span></td> <td>대인</td> <td>13,000원</td> <td>18,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소인</td> <td>10,000원</td> <td>15,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국가보훈대상자</td> <td>15,000원</td> <td>20,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장애인</td> <td>15,000원</td> <td>20,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경로우대자</td> <td>16,000원</td> <td>21,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 rowspan="2">남해안남 중권발전 협의회 소속도시 주민</td> <td>대인</td> <td>15,000원</td> <td>20,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소인</td> <td>12,000원</td> <td>17,000원</td> <td>1명 요금</td> </tr> <tr> <td rowspan="2"><span style="color: blue;">사천사랑 카드를 소지한 사람</span></td> <td>대인</td> <td>9,000원</td> <td>12,000</td> <td rowspan="2">1명 요금</td> </tr> <tr> <td>소인</td> <td>8,000</td> <td>10,000</td> </tr> </tbody> </table> <p>※ 1. 이용료 할인은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매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8. 연계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료의 할인율은 30% 이내로 한다.                  9.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이란 매표일</p>	구 분	일반 캐빈	크리스탈 캐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span style="color: blue;">사천향우 인증을 소지한 사람</span>	대인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소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6,000원	21,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 중권발전 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소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span style="color: blue;">사천사랑 카드를 소지한 사람</span>	대인	9,000원	12,000	1명 요금	소인	8,000	10,000
구 분	일반 캐빈	크리스탈 캐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소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6,000원	21,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 중권발전 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소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구 분	일반 캐빈	크리스탈 캐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span style="color: blue;">사천향우 인증을 소지한 사람</span>	대인	13,000원	18,000원	1명 요금																																																																									
	소인	10,000원	15,000원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장애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6,000원	21,000원	1명 요금																																																																										
남해안남 중권발전 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대인	15,000원	20,000원	1명 요금																																																																									
	소인	12,000원	17,000원	1명 요금																																																																									
<span style="color: blue;">사천사랑 카드를 소지한 사람</span>	대인	9,000원	12,000	1명 요금																																																																									
	소인	8,000	10,000																																																																										

현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 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0.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11.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시 향우인증(이하 “사천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모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천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사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공고 제2024-356호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천시 캠핑장 이용 요금 인상을 통하여 수익성 향상 도모 및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캠핑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에 대한 이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2. 주요내용

가. 캠핑장 시설이용료 인상 및 이용 시설 정비(안 별표 2)

나.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을 기준 신설(안 별표 3)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관광진흥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86, FAX: 831-6024)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이용료

구 분		이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비수기(성수기제외)		성수기 (7월~8월)	
명칭	크 기		주중	주말		
카라반 (스토리하우스)	6m×8m (4인용)	1동/1일	110,000	160,000	210,000	전기이용료 포 함
글램핑	6m×8m (4인용)	1동/1일	90,000	120,000	160,000	
일반캠핑	6m×8m (4인용)	1면/1일	35,000	40,000	45,000	

□ 주차장 이용료 : 연중 무료

□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캠핑장 이용시간(1일)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 카라반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글램핑 :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일반캠핑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
- 카라반(스토리하우스), 글램핑, 일반캠핑은 **1명** 추가 시 1인당 **2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합니다.

[별표 3]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	성수기	비수기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20%	20%	
7.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20%	20%	
8.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50%	50%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li> <li>-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li> <li>-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li> <li>-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li> <li>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li> <li>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ul> </li> <li>-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li> <li>- 한부모가족 중 지원 대상자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li> <li>-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 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li> <li>-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li> <li>-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li> </ul>				



##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lt;개정 2020. 10. 5.&gt;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이용료</p>						<p>[별표 2] &lt;개정 2024. . .&gt;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제6조 관련)                      □ 캠핑장 이용료</p>							
구 분		이용 시간	요 금 (원)			비 고	구 분		이용 시간	요 금 (원)			비 고
명칭	크 기		비수기 (성수기제외)		성수기 (7월 ~8월)		명칭	크 기		비수기 (성수기제외)		성수기 (7월 ~8월)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카라반 (스토리 하우스)	6m×8m (4인용)	1동/ 1일	100,000	150,000	200,000	카라반 (스토리 하우스)	6m×8m (4인용)	1동/1 일	110,000	160,000	210,000		
글램핑	6m×8m (4인용)	1동/ 1일	80,000	110,000	150,000	글램핑	6m×8m (4인용)	1동/1 일	90,000	120,000	160,000		
단체 글램핑	12m×9m (16인용)	1동/ 1일	240,000	360,000	400,000	일반캠핑	6m×8m (4인용)	1면/1 일	35,000	40,000	45,000		
일반야영	6m×8m (4인용)	1면/ 1일	25,000	30,000	35,000								
평 상	2.4m×2.4 m	1개소 /1일	15,000	20,000	25,000								

□ 주차장 이용료 : 연중 무료

□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캠핑장 이용시간(1일)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 카라반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글램핑 :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단체글램핑 : 시간당 2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일반야영**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평상 : 시간당 1,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
- 카라반(스토리하우스), 글램핑, **단체글램핑**, 일반야영장은 **1명** 추가 시 1일당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합니다.

□ 주차장 이용료 : 연중 무료

□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캠핑장 이용시간(1일)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퇴실시간 초과 시(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불가)
- 카라반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글램핑 :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일반캠핑**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
- 카라반(스토리하우스), 글램핑, 일반캠핑은 **1명** 추가 시 1인당 **2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합니다.

[별표 3] <개정 2021. 4. 29.>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	정수 기	비수 기	비 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 주소록을 둔 사람		20%	20%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20%	20%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li> <li>-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li> <li>-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li> <li>-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li> <li>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li> <li>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ul> </li> <li>-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li> <li>- 한부모가족 중 지원 대상자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li> <li>-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li> </ul>				

[별표 3] <개정 2024. . .>

사천시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율(제7조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	정수 기	비수 기	비 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 주소록을 둔 사람		20%	20%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20%	20%	
7.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20%	20%	
8.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50%	50%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료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li> <li>-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li> <li>-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li> <li>-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li>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li> <li>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li> <li>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li> </ul> </li> <li>-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li> <li>- 한부모가족 중 지원 대상자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li> <li>-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li> <li>-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li> <li>-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li> </ul>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시 향우인증(이하 “사천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천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해야 한다.

-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사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공고 제2024-357호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왕복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정비 및 관외 왕복 규정 신설(안 제8조)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교통행정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60, FAX: 831-6049)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 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항”을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2.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③ 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사천시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서 사천시 특별교통수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진료 목적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까지 운행한 특별교통수단이 최대 1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제1호 중 “제8조제1항제1호 및 시행”을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수단”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u></p> <p>2. <u>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u></p> <p>3. <u>제1호 및 제2호의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u></p> <p>② <u>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으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u></p> <p>&lt;신 설&gt;</p> <p>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항에</p>	<p>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p> <p>② <u>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u></p> <p>1. <u>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u></p> <p>2. <u>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u></p> <p>3.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p>

따른 임산부

3. 제1호 및 제2호의 이용대상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교통약자의 특성에 따라 이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이용 목적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제7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삭 제>

<삭 제>

③ 제2항 각 호의 사람은 사천시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서 사천시 특별교통수단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진료 목적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까지 운행한 특별교통수단이 최대 1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기간) -----  
-----  
-----  
-----  
-----.

1. 시행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재판정 영구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 기간을 영구적용 할 수 있다)

-----  
-----  
-----  
-----

2.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기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  
-----  
-----  
-----  
-----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천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  
수단-----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안 제8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소요예산: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왕복 증가 예상 비용 17,118천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외 왕복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예상 비용이 17,118천원으로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작성자: 교통행정과장 김미정

## 관 련 법 규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2023. 7. 20.>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7. 20.>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공고 제2024-361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바다 낚시공원 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기준 신설(안 제10조제3항)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35,

FAX : 831-6032)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입장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표 3에 따른 당일 이용료에 한정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 ② (생   략) <u>&lt;신   설&gt;</u>	제10조(입장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입장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표 3에 따른 당일 이용료에 한정하여 50 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위·수탁계약의 해지) ① (생   략)	제21조(위·수탁계약의 해지) (현행 제 1항과 같음)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공고 제2024-366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자연휴양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에 대한 입장료 면제 및 이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자연휴양림 이용료 면제 및 감경 기준 신설(안 제5조, 별표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40, FAX: 831-6038)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별표 2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24. . .>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5조제3항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숲사랑지도원		-	20%	
7. 한국숲사랑청년단의 단원		-	20%	
8.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	20%	
9. 다문화가족		-	20%	
10. 다자녀가정		-	20%	
11.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0%	20%	
12.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50%	50%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li> <li>-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li> <li>-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li> <li>-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li> <li>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li>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li>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li> </ul> </li> </ul>				

유공자

-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u>에 따른 자연휴양림 이용료 등의 징수와 환급 등에 관한 사항과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u>&lt;신 설&gt;</u></p> <p>③ (생략)</p>	<p>제1조(목적) ----- ----- ----- <u>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u> ----- ----- ----- ----- ----- ----- ----- ----- ----- ----- -----</p> <p>제5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p> <p>③ (현행과 같음)</p>

##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lt;개정 2023.12.21.&gt;</p> <p style="text-align: center;"><b>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b></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조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감면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성수기 /주말</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수기 /주중</th> <th style="text-align: left;">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rowspan="10" style="vertical-align: middle;">산 립 휴 양림, 숲 속 의 집, 야 영 데 크의 이 용 료 에 한함</td> </tr> <tr> <td>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3. 국가보훈대상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4. 기초생활보장수급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6. 숲사랑지도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7. 한국숲사랑청년단의 단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8.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9. 다문화가족</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10. 다자녀가정</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colspan="5">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li> <li>-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li> <li>-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li> <li>-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li> <li>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li>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li>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li> <li>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ul> </li> </ul> </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	대상기간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산 립 휴 양림, 숲 속 의 집, 야 영 데 크의 이 용 료 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숲사랑지도원		-	20%	7. 한국숲사랑청년단의 단원		-	20%	8.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	20%	9. 다문화가족		-	20%	10. 다자녀가정		-	20%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li> <li>-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li> <li>-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li> <li>-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li> <li>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li>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li>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li> <li>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ul> </li> </ul>					<p>[별표 2] &lt;개정 2024. . .&gt;</p> <p style="text-align: center;"><b>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b></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조제3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감면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대상기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성수기 /주말</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수기 /주중</th> <th style="text-align: left;">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rowspan="12" style="vertical-align: middle;">산 립 휴 양림, 숲 속 의 집, 야 영 데 크의 이 용 료 에 한함</td> </tr> <tr> <td>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3. 국가보훈대상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4. 기초생활보장수급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6. 숲사랑지도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7. 한국숲사랑청년단의 단원</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8.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9. 다문화가족</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10. 다자녀가정</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11. 사천향우인증증 소지 하고 있는 사람</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12. 사천사랑카드를 소지 하고 있는 사람</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r> <tr> <td colspan="5">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li> <li>-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li> <li>-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li> <li>-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li> <li>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li>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li>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li> <li>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li> </ul> </li> </ul> </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	대상기간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산 립 휴 양림, 숲 속 의 집, 야 영 데 크의 이 용 료 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숲사랑지도원		-	20%	7. 한국숲사랑청년단의 단원		-	20%	8.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	20%	9. 다문화가족		-	20%	10. 다자녀가정		-	20%	11. 사천향우인증증 소지 하고 있는 사람		20%	20%	12. 사천사랑카드를 소지 하고 있는 사람		50%	50%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li> <li>-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li> <li>-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li> <li>-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li> <li>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li>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li>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li> <li>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li> </ul> </li> </ul>				
감면대상	대상기간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산 립 휴 양림, 숲 속 의 집, 야 영 데 크의 이 용 료 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숲사랑지도원		-	20%																																																																																																												
7. 한국숲사랑청년단의 단원		-	20%																																																																																																												
8.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	20%																																																																																																												
9. 다문화가족		-	20%																																																																																																												
10. 다자녀가정		-	20%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li> <li>-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li> <li>-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li> <li>-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li> <li>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li>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li>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li> <li>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ul> </li> </ul>																																																																																																															
감면대상	대상기간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산 립 휴 양림, 숲 속 의 집, 야 영 데 크의 이 용 료 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숲사랑지도원		-	20%																																																																																																												
7. 한국숲사랑청년단의 단원		-	20%																																																																																																												
8.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	20%																																																																																																												
9. 다문화가족		-	20%																																																																																																												
10. 다자녀가정		-	20%																																																																																																												
11. 사천향우인증증 소지 하고 있는 사람		20%	20%																																																																																																												
12. 사천사랑카드를 소지 하고 있는 사람		50%	50%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li> <li>-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li> <li>-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li> <li>-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li> <li>-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li> <li>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li>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li> <li>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li> <li>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li> </ul> </li> </ul>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을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물」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 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말한다.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을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란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관 련 법 규

###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시 향우인증(이하 “사천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모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천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사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공고 제2024-367호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장난감은행 연회비를 면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연회비 면제 기준 신설(안 제5조)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80,

FAX: 831-6018)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회원 및 연회비) ① ~ ③ (생략)</p> <p>④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lt;신 설&gt;</u></p>         <p>7. (생략)</p> <p>⑤ (생략)</p>	<p>제5조(회원 및 연회비)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4조에 따른 <u>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공고 제2024-368호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 우주항공과학관 관람료를 면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관람료 면제 기준 신설(안 제10조)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우주항공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74,

FAX: 831-6044)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따라 발급받은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를 “따른 사천시 우대인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제10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 감경

제2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운영 및 위탁 등)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과학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및 시설물관리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u>」 제4조제2호에 따른 협약 기간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진다.</p> <p>④ ~ ⑩ (생략)</p> <p>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삭제</p> <p>2. ~ 11. (생략)</p> <p>12.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 &lt;중전의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23.12.21.&gt;</p>	<p>제4조(운영 및 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 ----- -----</p> <p>④ ~ ⑩ (현행과 같음)</p> <p>제10조(관람료의 감면) ① ----- ----- ----- -----</p> <p>2. ~ 11. (현행과 같음)</p> <p>12. ----- ----- 따른 사천시 <u>우대인증을 소지한 사람</u> ----- ----- -----</p>

<신 설>

13. (생 략)

② (생 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④ (생 략)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3.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2. (현행과 같음)

3.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 감경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시 향우인증(이하 “사천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천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사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공고 제2024-369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기준 신설(안 제8조제2항)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11, FAX : 831- 6013)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다만,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에만 해당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50퍼 센트 감면 가.·나. (생 략)</p> <p><u>&lt;신 설&gt;</u></p> <p>2.·3. (생 략)</p> <p>③ (생 략)</p>	<p>제8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 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u>」 제14조 에 따른 <u>사천사랑카드를 소지 한 사람(다만,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에만 해당한다)</u></p> <p>2.·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공고 제2024-370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 및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을 지원하고, 이주직원과 그 가족의 정착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이주직원에 대한 규정 명확화, 이주직원등 규정 신설(안 제2조)
- 나. 위원회 임무 명확화(안 제3조)
- 다. 이주직원등에 대한 지원사항 구체화(안 제12조)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라. 사천사랑카드 발급 규정 신설(안 제14조)
- 마. 공공기관과 협력사업 추진 근거 마련(안 제15조)
- 바. 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근거 마련(안 제16조)
- 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금 지원 중단 및 환수 근거 마련(안 제17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10,  
FAX: 831- 6011)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3. “이주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4. “이주직원등”이란 제3호의 이주직원과 이주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국내거  
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지원”을 “심의·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을 “(이주직원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을  
“이주직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장  
학금”을 “전·입학장려금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대출이자”를 “대출이자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  
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거주지 지원”을 “거주지 또는 월세 지원”으  
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  
분)에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거, 교통, 문화, 체육 등 편의 지원
5. 주택(오피스텔 포함) 중개 및 등기 보수 지원
6. 창업, 채용 및 근속 지원
7.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
8.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주직원등은 제1항제8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천사랑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사천사랑카드의 발급)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제8호의 지원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주직원등에게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이주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사랑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인이 사천사랑카드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사랑카드 (재)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 발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 결정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천사랑카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구분	신 규( )	재발급( )	처리기간	일
------	------	------	--------	--------	------	---

## 1. 이주직원 기재사항

인적사항	성 명		국 적	
	생년월일 (남/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휴대전화	
	현 주소 (체류지)			
	직전주소 (직전 체류지)			
공공기관 현황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직장전화	
	기관주소			
카드수령지	<input type="checkbox"/> 현주소지 <input type="checkbox"/> 직장주소 <input type="checkbox"/> 기타(수령지 아래 기재)			

## 2. 발급받을 사람

	이주직원 과의 관계	성명	국적	생년월일(성별)	휴대전화
본인 · 배우자 · 직계혈족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기타기재사항					

위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며,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직원(가족)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이주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재직증명서(신청일로부터 최근 30일 이내) 2. 주민등록 등본	수수료 없음
------	--	-----------

공무원 확인	전입신고(주민등록 확인)	확인(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가족관계 확인(발급대상자에 가족이 포함된 경우)	확인(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재직사항 확인	확인(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① 본인(이주직원 외 가족)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미동의 시 신청인이 해당서류 직접 제출)
- ② 사천사랑카드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추가 발급받을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사천사랑카드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중복지원 관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국적,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기관명, 기관주소 등
  -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천사랑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여부	정보제공 동의자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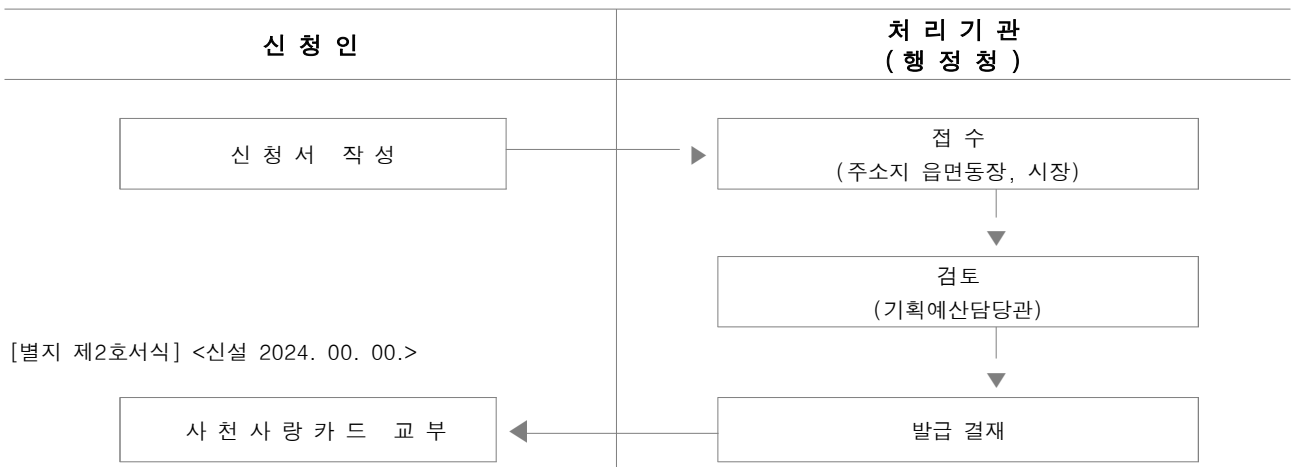
유의사항

사천사랑카드는 사천시로 전입한 공공기관 이주직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우대혜택은 예산사정 및 제반 여건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 ① 내국인은 대한민국을 적고, 외국인은 본인의 국적을 적습니다.
- ② 생년월일은 0000. 00. 00. 형태의 8자리로 적습니다.
- ③ 연락처는 본인의 휴대전화 등 연락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④ 현주소는 사천시로 전입한 주소를 적습니다.(주민등록된 주소)
- ⑤ 공공기관 등 현황은 이주직원이 소속된 기관명, 부서명, 직위, 기관주소, 직장연락처를 적습니다.
- ⑥ 가족사랑카드를 수령지를 V 표시합니다. 수령지가 기타인 경우 아래에 적습니다.
- ⑦ 관계는 이주직원은 본인으로, 가족인 경우 이주직원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이주직원의 자녀인 경우 '자녀'로 적고, 이주직원의 어머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모'로 적습니다.
- ⑧ 기타기재사항은 신청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사천시 내 거주지가 다른 경우 적습니다.
- 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 리 질 차



# 사천사랑카드

(앞면)

성명(생년월일)

## 사천사랑카드

(유효기간: . . .)



사 천 시 장

규격: 85mm × 54mm

(뒷면)

### 안내사항란

- 사천사랑카드는 앞면의 기명 1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신분증과 함께 제시 바랍니다.

## 사천사랑카드 (재)발급 대장

연번	접수일	발급대상자						이주직원 인적사항			발급 번호	발급일	비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전입 전 시·군명	공공기관명	성명	관계			
													신규
													재발급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p style="margin-left: 40px;">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p> <p style="margin-left: 40px;">나.·다. (생략)</p> <p>2.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p> <p style="margin-left: 40px;">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p> <p style="margin-left: 40px;">나.·다.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이주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p> <p style="margin-left: 40px;">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p> <p style="margin-left: 40px;">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p> <p style="margin-left: 40px;">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p> <p>4. “이주직원등”이란 제3호의 이주직원과 이주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서 다음 각</p>

현행	개정안
<p>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p>1. ~ 4. (생략)</p> <p>제5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p> <p>제8조(회의 등) ①·② (생략)</p> <p>&lt;신설&gt;</p> <p>제12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p>	<p>목의 사람을 말한다.</p> <p>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p> <p>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시로 체류지를 둔 외국인</p> <p>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p> <p>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심의·지원</u>-----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의 임기)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8조(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제12조(이주직원등에 대한 지원)</p> <p>① ----- -----<u>이주직원등</u>----- -----</p>

현 행	개 정 안
<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 ----- -----.</p>
<p>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지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p>	<p>1. ----- ----- 전·입학장려금 지원 2. ----- 대출이자 지원 3. ----- 거주지 또는 월세 지원</p>
<p>&lt;신 설&gt;</p>	<p>4. 주거, 교통, 문화, 체육 등 편의 지원</p>
<p>&lt;신 설&gt;</p>	<p>5. 주택(오피스텔 포함) 중개 및 등기 보수 지원</p>
<p>&lt;신 설&gt;</p>	<p>6. 창업, 채용 및 근속 지원</p>
<p>&lt;신 설&gt;</p>	<p>7.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p>
<p>&lt;신 설&gt;</p>	<p>8.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p>
<p>4. (생 략)</p>	<p>9. (현행 제4호와 같음)</p>
<p>&lt;신 설&gt;</p>	<p>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lt;신 설&gt;</p>	<p>③ 이주직원등은 제1항제8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천사랑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14조(사천사랑카드의 발급)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제8호의 지</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u>원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주 직원들에게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u></p> <p><u>② 이주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사랑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인이 사천사랑카드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u></p> <p><u>④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사랑카드 (재)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u></p> <p><u>⑤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그 발급을 취소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u></p> <p><u>제15조(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 발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제15조 (생략)</p> <p>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18조·제19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p> <p>제16조(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등)</p> <p>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 결정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7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별지 제1호서식)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직원등에 대한 지원

나. 조례안 제11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및 제12조  
(이주직원등에 대한 지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지원 전제

1) 지원대상 기준: (1차 채용) 100명, (최종채용) 300명

구 분	이주가구*	이주인원**	비 고
1차 이전	94	172	
최종 이전	281	515	

\* 22년 혁신도시 평균 기준, 【 이주율(94%) 】 반영

\*\* 22년 혁신도시 평균 기준, 【 이주가구 + (가족동반율  
39% \* 동반자 2인) 】 반영

※ (참 고) 22년 상반기 발표 혁신도시 이주현황

구 분	이전 인원(A)	기혼자			독신· 미혼(C)	출퇴근	가족동반·1인 가구 이주율 (B+C)/A
		소계	동반 이주(B)	단신 이주			
계	45,626	29,657	17,749	11,908	13,155	2,814	67.70% (38.9%+28.8 %)

2) 지원기간 기준: 3년내 신청, 2년간 지원

3) 지원시책: 29개 시책 기준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세출	일반회계		10,279,000	6,753,131	2,813,805	
소계(a)			10,279,000	6,753,131	2,813,805			19,845,936
세입	지방세		10,279,000	6,753,131	2,813,805			19,845,936
	소계(b)		10,279,000	6,753,131	2,813,805			19,845,936

3. 부대의견: 없음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별지 제2호서식]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재원조달	10,279,000	6,753,131	2,813,805			19,845,936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279,000	6,753,131	2,813,805		19,845,936
	지방세	10,279,000	6,753,131	2,813,805		19,845,93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4년 제1회 추경 및 2025~2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편성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 관 련 법 규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5.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6.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8. “초광역권산업”이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 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5.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27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6.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17.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

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시대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2. 지방세 납부 현황

3. 사무소 소재 현황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공고 제2024-372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지원하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수강료 면제 기준 신설(안 제12조제2항)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 831-2596,  
FAX: 831-6063)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87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의실, 대강당, 학습실 등”을 “강의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 용허”를 “사용허”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제13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 중 “위촉”을 “위촉한”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시설”이란 평생학습센터 내의 <u>강의실, 대강당, 학습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u></p> <p>2. ~ 5. (생략)</p>	<p>제3조(정의) -----            ----- <u>뜻은 다음과</u> -----.</p> <p>1.-----  <u>강의실</u>-----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관리·운영) ① <u>시장은</u> 평생학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5조(관리·운영) ①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지도·감독) ① <u>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u>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 또는 장부, 기타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6조(지도·감독) ----- <u>관계공무원에게</u> -----            -----            -----            -----.</p>
<p>제8조(사용허가) ① (생략)</p> <p>②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사용허가</u>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p>	<p>제8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사용허</u>-----.</p>
<p>제9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u>각호</u>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 특성상 사</p>	<p>제9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 <u>각호</u>-----            -----.</p>

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  
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수강료 납부 및 면제)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생략)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  
- 제8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수강료 납부 및 면제) ① (현  
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이상이 19  
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  
람

제13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그 밖의 -----

<p>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p> <p>3. (생 략)</p> <p>② (생 략)</p> <p>제16조(포상 등) 제14조에 따라 <u>위촉</u> 강사 중 평생학습센터 운영 프로그램 램 우수 강사에 대하여는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 다.</p>	<p>-----</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포상 등) ----- <u>위</u> <u>촉한</u> ----- ----- ----- -----.</p>
---	---

## 관 련 법 규

###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3.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
4.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